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교원 등의 파견근무 근거 마련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30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사립학교 교원 등의 파견근무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0. 31.
3. 회부연월일: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 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 등의 파견근무 근거 마련

개정안은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서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는 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동일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는 사례는 2022년 112개 학교에서 2024년 84개 학교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79.8%(67개), 교원 85.0%(96명), 학생 85.2%(98명)로 공립학교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1] 동일 학교 내 부모·자녀 근무·재학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4 구성비(%) ¹⁾
학교(개)	공립	12	17	17	20.2
	사립	100	80	67	79.8
	합계	112	97	84	100.0
교원(명)	공립	15	17	17	15.0
	사립	152	114	96	85.0
	합계	167	131	113	100.0
학생(명)	공립	15	17	17	14.8
	사립	157	115	98	85.2
	합계	172	132	115	100.0

주: 1) 2024 구성비는 2024년도에 공·사립 학교/교원/학생 중 해당 학교의 학교/교원/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임
 1. 각 연도 3월 1일 기준
 2. 고등학교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2022년 623명에서 2023년 58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 68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비중이 51.7%(354명)로 사립학교 교원의 비중 48.3%(331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다른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4 구성비(%) ¹⁾
공립	246	253	354	51.7
사립	377	334	331	48.3
합계	623	587	685	100.0

주: 1) 2024 구성비는 2024년도에 공·사립 학교 교원 중 해당 학교의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임
 1. 각 연도 4월 1일 기준
 2. 중등학교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기준
 자료: 교육부

동일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악용하여 문제가 발생¹⁾할 수 있고, 교원이 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교육부가 2018년에 발표한 고교교육 혁신방향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재학하는 경우 교원의 전보, 동일 학년 미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²⁾

또한 교육부는 2024년 5월부터, 교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재학하거나 교과목 수요보다 많은 교원이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음.³⁾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별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파견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

1) 2018년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2) 2018.8.17.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평가관리 강화방안으로,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지침 마련’이 제시됨.

3) 「사립학교 교원 인사교류(파견) 관련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5.31.)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할 수 있고, 교육 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파견을 통해, 동일 학교 내 교원과 자녀가 근무하거나 교과목 수요와 교원 수가 불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의 파견에 적용할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는 사립학교 교원⁴⁾과 교육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에 의해 임용되는 국·공립학교 교원⁵⁾은, 서로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5)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임면절차 등이 적용됨.⁶⁾

따라서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임면절차 등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파견근무에 적용할 인사관리, 복무 등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에 대한 사항은, 현행 교육공무원 파견근무 근거 법령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⁷⁾, 파견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사항은 이를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공직제도 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립학교 교원을 일반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면권자의 차이에 따라 그 임면절차 등에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5헌바29, 1997.12.2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 2005헌가7, 2006.2.23.) 참고

7)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음.
다만,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의 적용 배제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근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파견근무 조항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현행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 및 과원(상치) 교사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안에 이견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 정원 감소 및 정원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교원 파견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인사이동 하게 되므로 교원 수급과 관련한 법률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충청남도교육청: 이견없음 - 사립학교 교사-자녀 상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사립-국·공립학교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사립초중등학교법인협의회, 학교법인 심석학원, 삼괴중·고등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장안여자중학교: 이견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근거를 담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해당 조항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한사립학교장회: 일부수정 -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 및 운용 문제에 있어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으로의 전환 채용, 사립학교 간 특별채용 방안 까지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삼례중학교: 신중검토 - 공·사립학교 교사의 임용경로 및 인사이동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 교사-자녀 상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학 과정에서의 원칙적 차단 방안 추진이 타당함.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인사교류보다 온라인학교 이용 확대 추진을 권장함.

문 의 처

02)6788-5189